

서울고등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82690 약정금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17. 선고 2010가합914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2.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경 당시 ㉹㉹㉹의 대표이사로 있던 ㉹㉹㉹으로부터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 피고 운영의 '㉹㉹㉹' 골프장 운영책임자를 구하고 있어 원고를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당시 주식회사 ㉹㉹㉹ 운영의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2010. 3. 27. ㉹㉹㉹의 추천을 받아 ㉹㉹㉹에게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을 직접 만나 원고가 원하는 연봉 액수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같은 달 31.경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다. 그런데 ㉹㉹㉹은 2010. 4. 3. 갑자기 ㉹㉹㉹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원고 대신 ㉹㉹㉹가 2010. 4. 2.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은 2010. 3. 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채용하여 그 보수로 연봉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0. 4. 3. 일방적으로 위 약정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상 대표이사의 임기인 3년간의 보수로 3억 9,000만 원(= 연봉 1억 3,000만 원 × 3년)과 차량 지원비 1억 800만 원(= 월 300만 원 × 12개월 × 3년)의 합계금 4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호,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월 8,750,2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제의받고서 2010. 3. 31.경 위 회사를 그만둔 사실, ◇◇◇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 골프장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은 2010. 4. 1. 원고에게 이사 등재 시 필요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대표이사라고 호칭한 사실, 원고는 2010. 4. 2. 위 '□□□' 골프장에 출근하여 당시 전무와 팀장 이상의 직원들과 상견례를 가진 다음 골프장의 주요 현황과 과제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피고의 2009년 감사보고서도 이메일로 송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의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인바, 비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 사이에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피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는 이상 바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뿐만 아니라 설령 위 ◇◇◇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이남우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법상의 대표이사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후임 대표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 대리권 수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주 또는 사내이사의 자격인 ◇◇◇ 개인에 대하여 위 약정의 파기로 말미암은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복형

              판사      김상우